

방화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섭

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소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질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살인·강도·강간·폭행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방화범죄는 큰 피해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렵고, 연쇄성과 재범율, 모방성이 높으며, 누구나 저질러질 수 있고,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 범의은폐 목적의 방화유형, 원한과 복수를 위한 방화, 반달리즘·사회적 불만과 스릴에 의한 방화, 방화광 및 정신병환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실제 방화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화범죄는 피해가 크며, 야간에 주로 발생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1세~50세 사이에 가장 많은 방화범이 있었으며, 방화 시 음주에 의한 주취상태에서 많은 방화를 저질렀다. 그리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방화를 저질렀으며, 현실불만에 의한 방화가 많았다. 그리고 단독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류계층의 방화범이 많았다. 방화범죄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화범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방화범죄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와 같은 첨단기법 등을 활용하고, 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활용하여 화재수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주제어: 방화범죄, 방화 범죄 실태, 방화유형,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1. 서론

불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로써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식생활과 주거와 같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음과 동시에, 인간의 영역을 지키는 도구 및 공격을 위한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불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공격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방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화는 재산적 피해를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상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신체적 피해를 주고, 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방화는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다, 과거 로마시대부터 방화는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죄로 규정하여, 로마법에서는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였고, 게르만 법에서도 생명과 재산에 관한

침해범으로 보았으며, 프로이센 형법에서도 공공 위험죄로 규정하였다(최종태, 2001: 32).

따라서 방화범죄는 형법을 바탕으로 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일행위에 비해 그 피해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 중에서도 중(重)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방화범죄는 다양한 범죄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기타 일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질러지는 방화범죄도 발생하고 있지만, 방화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화광(放火狂, pyromaniac)과 같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방화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화범죄에 대한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방화범죄에 대한 정의 및 유형분류, 특징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공식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방화범죄에 대해서 접근을 실시하였다.

방화의 원인 및 방화의 동기, 방화범의 연령, 방화범의 기타 특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검찰의 범죄백서를 중심으로 방화범죄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방화범죄에 대해서 설명함에 있어 연쇄방화범죄와 중첩되도록 설명하거나, 연구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쇄방화범죄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의 방화범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경찰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II. 방화범의 정의 및 특성

1. 방화의 정의

방화란 고의로 불을 붙여 물질을 태우는 것으로 목적물이 연소하는 원인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화재를 소화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소화 조치를 하지 않고 목적물을 소훼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김영철·김성섭, 2007; 267).

미국의 전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에서는 방화성 화재(Incendiary Fir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화하지 않아야 했을 화재로 인식된 상황 하에 고의로 발생한 화재로 정의하고 있다(김수진, 2010: 209).

그리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착취의도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거건축물, 가옥, 공공건축물, 자동차 혹은 비행기, 그 외 개인의 소유물을 연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 혹은 악의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 및 그 미수’라고 정의하였다(Bartol & Bartol; 장석현·이창한 역, 2010: 491).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자연적인 상황에서 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 혹은 여타의 이유로 고의로 불을 질러 소화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방화 행위에 대해 우리 형법에서는 방화죄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죄란 고의로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공용 이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타 일반건조물이나 물건을 훼손하는 공공위험죄를 말하고 있다(김영철·김성섭, 2007: 267).

방화죄를 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고 하는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적인 범죄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김영철·김성섭, 2007: 267).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방화죄를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의 위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윤상민, 2005: 79).

이러한 인식은 국내 뿐 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피해가 크고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방화범죄의 심각성과 증가율에 주목하여 1970년대부터 방화범죄를 제1종 범죄로 분류하여 관련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최인섭 외, 1993; 김상균, 2008).

이러한 방화죄에 대해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광의적 의미의 방화도 방화죄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으며,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준방화죄가 포함되고 있다(김수진, 2010: 208).

그리고 방화는 살인·강도·강간과 더불어 강력 범죄로 분류되고 있으며, 다른 강력범죄와는 달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이는 방화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성한기·박순진, 2003; 김경옥, 2009: 5).

이런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방화를 저지르는 자를 방화범이라 하며, 방화범이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주는 범죄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강도·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죄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최인섭 외, 1993; 김상균, 2008).

이러한 방화는 현재의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를 비롯한 과거에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심각하게 다루었으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비교적 무거운 처벌과 그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2. 방화의 특징

1) 큰 피해와 회복의 어려움

방화범죄는 작은 범죄에 비해 피해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방화범죄의 경우는 신체적 피해를 포함하여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화범죄는 그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크고 복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윤상민, 2005: 79).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보다는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더 높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fo crime)의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까지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공정식·김경하, 2008: 114).

2) 연쇄성

방화범죄는 상습적·연쇄적 경향이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환경에 의한 영향이 개인적인 욕구불만에 의해 발생한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노·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치 지속적인 여가행위를 즐기는 것처럼 방화를 통한 해소방법 택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처음 검거되어 통계자료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미 3~10건 이상의 유사 방화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방화범죄는 ‘연쇄범죄’로 추정할 수 있다(임준태, 2010: 26).

실제, 부산에서 발생한 동래연쇄방화사건을 비롯한 울산 봉대산 일대에 발생한 산불 방화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등 연쇄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높은 재범율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다시 방화범죄 저지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 방화범죄자에 의한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초범은 26%(377명), 재범은 74%(929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범 이상의 연쇄성을 보이는 전과자의 경우 30%를 차지하는 등 높은 재범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2009년도 방화범죄 재범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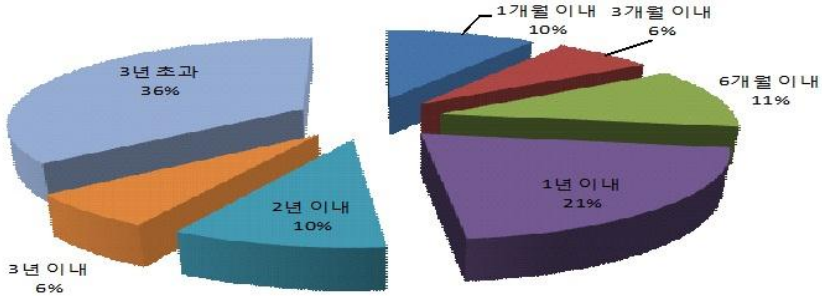
(단위: 명)

계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미상
1,443	377	167	137	107	83	435	137
100%	26%	12%	9%	7%	6%	30%	9%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1) 중앙일보, 2003. 2. 18일자 뉴스, “.....”평소 사회에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날 0시30분쯤에는 전남 고흥에서 왜소증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던 남자(50)가 연쇄 방화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리고 동종 전과자는 5.7%이고, 이중 전과자는 93.3%로 나타나 재범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 전과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범을 범하는 경우가 48.4%에 달하며 구체적인 재범기간은 <그림 1>의 내용과 같이 6개월이 지난 후 1년 사이에 재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월 이내 다시 방화를 저지르는 방화범이 전체의 10%나 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1> 2009년도 방화범죄자 중 동종 재범자 재범발생 기간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건 이상의 방화범죄를 저지른 연쇄방화범들의 범죄이력 연구에 의하면, 전체 83명 중 45명은 여러 건의 중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바 있었고, 방화범 전과자는 17명이었으며, 86.6%가 이전에 중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Sapp, *et. al.*, 1996; 임준태, 2010: 30).

따라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경우 재범율이 높으며, 이러한 재범율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범을 저지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범죄에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의 통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4) 높은 모방성

방화범죄는 모방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범죄의 경우 다른 여타 범죄에 비해 모방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TV 및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방화범죄 및 방화도구 제작과 같은 자극적인 매체의 전달로 인해 호기심을 가진 자들에 의한 모방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승려문 방화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방화범죄를 접하게 된 유사한 입장의 범죄자들이 방화를 기도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형태의 모방범죄를 저지려고 하는 사례²⁾가 보고 되었다.

2) 중앙일보, 2003. 2. 18일자 뉴스, “.....18일 오후 11시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영동 H나이트클럽 입구에서 郭모(38. 무직.수원시 남창동)씨가 출입구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郭씨는 클럽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 종업원들에 의해 밖으로 쫓겨나자 앙심을 품었던 것

5) 범죄 실행 및 범행장소 접근성 용이

방화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방화범죄에 대한 장소의 실행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화재의 경우 지능이 낮은 사람을 비롯하여 정신박약자도 화재 대상물에 접근이 용이하여 들키거나 제지 받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희열감을 맛보기 용이하다(김수진, 2010: 212). 어린이·노인·불구자와 같은 무력한 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도 적지 않다(이상현, 2004: 311).

실제도 정신박약자는 일반범죄에서 구성정도가 10% 미만이지만 방화범죄에 있어서는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특징을 차지하여 접근의 용이성을 증명하고 있다(김수진, 2010: 211).

6) 수사의 어려움

방화범죄의 경우 화재로 인해 증거가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범죄의 경우 일반 화재사고 은폐되어 초동 단계에서부터 방화가 화재의 원인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화재 감식 등 수사 활동결과 비로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판명이 된다. 그래서 사회 일반의 초기 대응과 지속적 대응이 어렵고, 방화범죄의 증거수집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최중태, 2001: 32).

현장 감식은 다른 범죄현장과 마찬가지로 방화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방화범죄의 특성상 효과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방화사건의 12~20% 정도만이 해결되고 있으며(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Haakkaanen, Puolakka & Santtla, 2004; 김경옥, 2009: 18), 검거되는 방화범의 3%만이 유죄를 선고 받고 있는 실정이다(Geller, 1992; 김경옥, 2009: 18).

3. 방화범죄의 동기

방화의 동기는 보험금을 타기 위함이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다양하다. 청소년이 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국내에서 발생한 유명한 방화사건으로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³⁾,

으로 드러났다. 郭씨는 부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한통(18ℓ)을 사 양탄자가 깔린 계단과 건물 내부에 끼얹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순간 폐쇄회로TV를 통해 이를 보고 달려간 종업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 3)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城內洞)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남자가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빼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린 대형참사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50대 중반의 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판하다 판단착오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화범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南山洞) 명덕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성내동 중앙로역에서 열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갑자기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빼대만

승례문 방화 사건⁴⁾, 부산 동래연쇄방화⁵⁾, 울산 봉대산 방화 사건⁶⁾ 등 대표적인 방화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컸으며, 인명피해도 크게 발생함과 동시에 재산적 피해도 상당하였다.

일반적으로 방화동기를 기준으로 방화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학자들의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Luis와 Yanell(1951)은 방화범 유형에 따라, 재산 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방화범을 제외한 모든 방화범들을 동기에 의한 방화범(Motivated Firesetters), 방화광(Pyromaniacs), 의용소방대형(Volunteers), 영웅심리형(Would-Be-Heroes), 부랑자형(Vagrants), 정신이상자(Psychotics)로 분류하였다(김상균, 2009: 261)

그리고 Boudreau와 그의 동료들(1977)은 방화범죄 연구를 통해 방화 범죄의 동기는 보복·원한·질투에 의한 방화, 반달리즘·고의적 기물파괴, 범죄은닉·주의확산전략 방법의 방화, 이득목적·보험사기를 위한 방화, 협박·공갈·테러·과괴공작을 위한 방화, 방화벽 및 그 밖의 심리적 동기에 의한 방화에 의해 나뉜다고 하였다(Bartol & Bartol; 장석현·이창한 역, 2010: 494).

그리고 White(1996)의 방화연구에서는 방화광에 의한 방화, 복수를 위한 방화, 이득을 얻기 위한 방화, 영웅심·허영심을 위한 방화, 스틸 추구·과괴를 위한 방화, 청소년 방화, 범죄은닉을 위한 방화, 테러·사회적 항거를 위한 방화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상균(2009)은 경제적 이익에 의한 방화, 범죄은폐를 목적으로 한 방화, 원한·복수·미움에 의한 방화, 스틸·장난·사회불만에 의한 방화, 방화광에 의한 방화, 직업적 보상을 위한 방화로 나뉘어서 설명하였다(김상균, 2009: 262).

위 내용을 종합하여, 동기에 의한 방화범을 분류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방화, 범죄은폐와 같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방화, 원한·복수·사회 불만 등 분노표출을 위한 방화, 스틸·장난 등과 같이 자신들의 쾌락 만족을 위해 저질러지는 방화, 반달리즘 및 고의적 기물파괴를 위한 방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남았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 내려 역 구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출근시간이 지나가는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타고 있어서 인명피해도 엄청나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4)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쯤, 채종기가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일어난 불이 흰 연기와 함께 승례문 2층에서 발생하여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32대, 소방관 128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불씨를 제거하고자 건물 일부를 잘라내고 물과 소화 약제를 뿌리며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2월 11일, 오전 0시 25분경, 2층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이고 화재 4시간 만에 오전 0시 58분경 지붕 뒷면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곧 2층이 붕괴하였다. 이어 바로 1층에 불이 붙어 새벽 1시 54분에는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을 남긴 채 모두 붕괴하여 발화 5시간 만에 결국 전소되었다.
- 5) 지난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산 동래구의 인적이 뜸한 지역의 차량만을 골라 방화를 저지른 사건으로 체포된 백모씨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 6) 2000년 이후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만 모두 90여 차례의 산불이 났다. 이 때문에 40여ha의 산림이 소실(피해금액 80억여원)됐다. 이 산불 연쇄방화범은 ‘봉대산 다람쥐’라는 별칭으로 현재 관계당국에서는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잡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심각성이 대두되어 3,000만원이었던 포상금을 3억원으로 올렸다. 최근에는 이 산불이 인근 엽포산·무룡산 등지로 확대됐었으나, 아직 명확한 증거 및 수사단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 방화범죄의 유형별 분류

연구자	유형분류
Lewis & Yarnell(1951)	동기에 의한 방화범, 방화광에 의한 방화, 의용소방대형, 영웅심리형 방화범, 부랑자형 방화, 정신이상자에 의한 방화
Boudreau(1977)	보복·원한·질투에 의한 방화, 반달리즘·고의적 기물파괴, 범죄은닉·주의확산전략 방법의 방화, 이득목적·보험사기를 위한 방화, 협박·공갈·테러·파괴공작을 위한 방화, 방화벽 및 그 밖의 심리적 동기에 의한 방화
Rosenbauer(1981)	반달리즘에 의한 방화, 원한에 의한 방화, 방화광에 의한 방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방화, 범죄은닉을 위한 방화
Bradford(1982)	우연적인 방화, 정신이상 및 정신착란에 의한 방화, 복수를 위한 방화, 성적 만족을 위한 방화, 관심 끌기 혹은 도움 요청을 위한 방화, 전문적인 방화, 어린이들의 방화, 복합적인 동기에 의한 방화
Inciardi & Binder(1983)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방화, 반달리즘에 의한 방화, 범죄은폐 목적 방화, 보험금 목적 방화, 흥분 방화, 방화광에 의한 방화, 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방화, 복지사기 방화, 공명심을 위한 방화
Sakheim & Osborn(1986)	호기심 또는 우연에 의한 방화범, 도움을 갈구하는 방화범, 관심을 끌고자 하는 방화범, 영웅이 되고자 하는 방화범, 흥분이나 성적만족을 추구하는 청소년 방화범, 정신병적 방화범
White(1996)	방화광에 의한 방화, 복수를 위한 방화, 이득을 얻기 위한 방화, 영웅심·허영심을 위한 방화, 스릴 추구·파괴를 위한 방화, 청소년 방화, 범죄은닉을 위한 방화, 테러·사회적 항거를 위한 방화
Harris & Rice의 정신장애인 방화범 분류(1996)	정신병자형, 비자기 주장자형, 다중 방화범형, 범죄자형
FBI의 분류	손괴형방화, 보복형 방화, 흥분추구 방화, 범죄은폐형 방화, 이익추구형 방화, 정신이상형 방화, 혼합형 방화, 극단주의 방화, 연쇄방화, 연쇄폭파
김상균(2009)	경제적 이익에 의한 방화, 범죄은폐를 목적으로 한 방화, 원한·복수·미움에 의한 방화, 스릴·장난·사회불만에 의한 방화, 방화광에 의한 방화, 직업적 보상을 위한 방화
김수진(2010)	반달리즘에 의한 방화, 흥분에 의한 방화, 보복을 위한 방화, 범죄은닉을 위한 방화, 이익을 위한 방화, 극단 주의적 방화, 연쇄방화, 병적 방화

※ 자료: 김경옥·이수정, 2009; 김상균 2009; 김수진 2010; Bartol & Bartol; 장석현·이창한 역 2010, 내용 편집.

1)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를 저지르는 유형은 보험 및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방화를 저지르게 되는 대상으로는 보험가입 주택, 건물, 상품, 차량 등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방화범이 돈이 궁한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고 적발될 확률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분류로는 직업적 보상을 위해서 방화를 저지르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형태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소방직업을 가진 종사자 혹은 주변인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 내 사회적 위치를 부각시켜 자신의 지위나 인기를 향상시키기 위함이거나 혹은 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역으로 얻기 위해 방화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2011년 10월 경 뉴질랜드 Palmerston 에서 발생한 교회 방화범죄의 경우 그 지역을 지키는 경비원⁷⁾이 자신의 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방화를 저질러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이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 범죄은폐의 목적으로 하는 방화

범죄은폐의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방화는 살인범죄 및 기타 범죄의 증거 및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에 방해할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방화로서, 범죄은폐의 목적으로 하는 방화의 경우, 이전의 범죄가 대부분 살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력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죄로 확정된 방화범의 79%는 침입절도, 단순절도, 살인사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방화를 시도한다고 하였다(Inciardi, 1970; Robbin & Robbin, 1964; Bartol & Bartol; 장석현·이창한 역, 2010: 493).

주된 방화장소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현장, 사무실 등 1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장소 및 증거물이 있는 지역에 방화를 저지르며, 주로 서류 장부 및 증거자료 등과 같이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물건이 주된 대상이 된다.

3) 원한과 복수의 동기로 방화하는 유형

원한과 복수의 동기로 방화하는 유형의 경우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의 수단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방화를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재산을 소훼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재산 소유자에게 복수를 위함이 주요 목적이며, 주로 재산보다는 인명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 역시 살인만큼이나 강력한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인 소유, 거주 또는 관계 장소, 물품 등이 주된 대상이 되며, 원한관계·경쟁관계·장애인·동성연애자·외국인등이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방화는 다른 유형의 방화와 비교했을 때 계획적이며, 단 한 번의 방화를 저지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한과 복수의 동기로서의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알코올, 약물의 영향이 확인된다고 하였다(Bartol & Bartol; 장석현·이창한 역, 2010: 493).

4) 반달리즘·사회적 불만과 스킬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는 방화

반달리즘으로 인한 방화는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태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불을 지르는 것

7) <http://www.stuff.co.nz/manawatu-standard/5828587/Firebug-security-guard-jailed-seven-years>

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불만과 스틸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는 방화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은 기성사회나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발 심리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재산의 파괴 또는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인한다(김수진, 2010: 216).

우리나라의 경우 드물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1992년 발생한 LA폭동, 2009년 그리스에서 발생하는 연쇄방화의 경우가 이 분류에 속한다.

이러한 반달리즘에 의한 방화의 경우 청소년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방화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을 도취하기 위해 행해지거나, 청소년 들은 집단화된 불량청소년이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거나 다른 그룹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때를 지어 거리 등을 배회하면서 방화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중환, 1998; 김수진, 2010: 215).

주로 야산, 방치물, 건물 등과 같이 위험을 야기할만한 대상물에 방화를 저지르며, 어린이·실업자·사회불만 표출자·모방법·연쇄방화범 등 사회적으로 비교적 소외된 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5) 방화광 및 정신병질자에 의한 방화

방화광에 의한 방화범죄의 경우 정신병질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것이 자신만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르는 부류를 말한다.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방화광이나 정서불안정 인격장애자들은 성적 또는 다른 희열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을 저지른다고 보고 있다(이근후 외 역 1995: 공정식·김경하, 2008: 116).

그들은 불길에 사로잡힌 것 같은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불을 붙이기 전 높은 긴장감을 느끼고, 불이 발화된 이후 내면에 격렬한 기쁨이나 해방감을 느낀다고 한다(Bartol & Bartol; 장석현·이창한 역, 2010: 494).

불특정 대상으로 야산, 방치물, 건물 등이 주된 방화대상이 된다. 이는 심리·정신장애·마약·알코올 중독 등이 원인이 된다.

III. 방화범죄의 실태

1. 방화범죄의 실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화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1996년 721건 이었던 방화범죄가 2005년에는 1,827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다시 5년이 지난 2009년도 발생한 방화범죄는 총 1,866건으로 2005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에 대한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범죄로 인해 2009년에는 총 69명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21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살인을 제외하고 강도·강간·폭행·상해 등 범죄 중

에서 가장 높은 사망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사건에 비해 피해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해정도를 살펴보면, 치료를 요하는 상해자 22명 중 ‘전치 2주 이하’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11명이었으며, 그다음 ‘전치 1개월 이하’ 5명, ‘전치 2개월 이하’가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치 6개월을 초과’하는 중상해자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록 그 수치는 미비하지만 피해에 대한 파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9년도 방화범죄 신체적 피해 실태

(단위: 명)

계	상해	사망
69	48	21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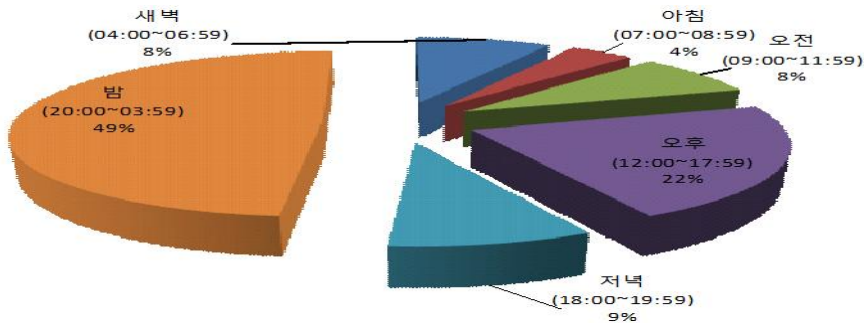
<표 4> 2009년도 방화범죄 신체적 피해 회복 실태

(단위: 명)

계	전치 2주 이하	전치 1개월 이하	전치 2개월 이하	전치 4개월 이하	전치 6개월 이하	전치 6개월 초과
22	11	5	4	1		2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2009년도 발생한 방화범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우선 방화범죄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방화범죄 발생 건수 중에서 ‘밤’으로 분류된 시간대인 20:00 ~ 03:59에 가장 많은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몰 전인 12:00~17:59에 22%나 되는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 특히, 방화범죄의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일몰이후 20:00시에서부터 새벽 6:59까지 발생한 방화 건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일몰이후 방화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2009년도 방화범죄 발생시간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방화를 저지르는 지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상과 아파트·다세대 주택이 각각 16%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상점이 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화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적 피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구밀집도 및 건물간의 간격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작은 화재에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인 단독주택, 아파트·다세대 주택에 일어나는 방화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지역에 방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표 5> 2009년도 방화발생지역별 방화범 분류

(단위: 명)

계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노상	상점	기타
1,866	293	452	302	72	747
100%	16%	24%	16%	4%	40%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2. 방화범의 실태

2010년 발행된 범죄백서를 바탕으로 방화범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방화범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1세~50세 연령대에서 전체 방화범 중 37%로 가장 많은 방화를 저질렀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51세~60세가 17%를 차지하였고, 31세~40세·18세 미만이 각각 1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방화범죄의 방화범들은 41세~60세 연령대에 방화를 저지르며, 이들은 살인·폭행·상해와 같은 여타 폭력범죄와 다른 양상으로 힘들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인 방화범죄의 특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표 6> 2009년도 방화범 방화 시 연령

(단위 : 명)

계	18세 미만	19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미상
1,443	176	153	177	498	222	45	7	65
100%	13%	11%	13%	37%	17%	3%	1%	5%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두 번째로, 방화범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취 시 방화를 저지르는 방화범이 전체의 45%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38%, 정신이상·정신박약자에 의한 방화가 각각 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음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사회의 불만 및 기타 개인의 문제로 인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이상 및 정신박약자에 의해 발생하는 방화범죄가 전체의 6%에 해당한다고 하여, 방화범죄의 경우 복잡한 경로를 통하지 않으며, 비교적 방화시설 및 방화물, 방화매개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7> 2009년도 방화범의 방화 시 정신상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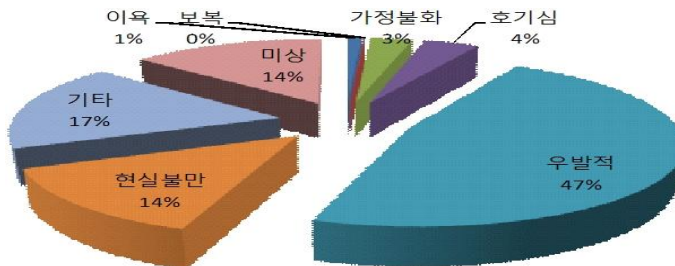
계	정상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주취	미상
1,407	538	34	3	43	633	156
100%	38%	3%	0%	3%	45%	11%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일반적으로 방화범의 동기에 대해서 무동기로 보는 일반적 시각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답한 방화범이 전체의 50%가까이 되는 4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현실불만이 14%, 호기심 4%, 가정불화 3%의 결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방화범의 동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방화범죄자들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원인에 의해 방화를 저지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신적 미성숙·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실불만이 14%를 차지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은 기성사회나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발 심리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재산의 파괴 또는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림 3> 2009년도 방화범의 방화동기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방화범죄에 대한 공범유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저지른 방화범이 전체의 9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명이 4%, 3명이 3%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는 극히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방화를 저지른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방화범죄는 어렵지 않게 저지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8> 2009년도 방화범죄자의 공범유무 및 공범 수

(단위: 명)

계	단독	2명	3명	4명	5명	10명 이하	20명 이하	기타
1,653	1,496	72	46	8	2	7	1	21
100%	91%	4%	3%	1%	0%	0%	0%	1%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방화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방화범죄자의 가정환경을 조사해본 선행연구에서는 방화범의 경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결손가정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상태이거나 혹은 전문직이 아닌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임준태, 2010: 37).

2009년도 방화범의 가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방화범 중 63%가 하류계층에 속했으며, 중류계층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 24%였다. 상류계층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넉넉하지 못한 환경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표 9> 2009년도 방화범 가정현황

(단위: 명)

계	하류	중류	상류	미상
1,443	908	339	9	187
100%	63%	24%	1%	12%

※ 자료: 2010 범죄백서에서 재구성.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방화범죄자의 특성은 무력한 성격이며,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정신병질로서 감정이 발산되지 못한 채로 축적하였다가 강한 열정상태, 편집상태, 정신쇠약상태가 되고 이러한 성격적 영향을 방화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이상현, 2001; 공정식·김경하, 2008: 115-116).

그리고 방화범들은 대체로 연령이 낮고 미혼자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친부모 슬하에서 양육된 비율이 낮다(Bradford, 1982; 공정식·김경하, 2008: 115). 그리고 단독범행이 많고, 범행은 주로 야간에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각이 어렵고 모방성과 연쇄성이 강하다(최종태, 2001; 공정식·김경하, 2008: 115). 그 밖에 방화전에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박형민, 2004; 공정식·김경하, 2008: 115).

성격적으로는 ‘낮은 자존감’을 충동적인 성격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집착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형민, 2004; 김수진, 2007; 공정식·김경하, 2008: 116).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들은 공식통계를 통하여 그러한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3. 문제점 도출

방화범의 방화실태와 방화범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방화 실태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방화범죄의 경우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소적 특징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방화범죄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비교적 안전성이 보장된 지역보다는 일반 단독주택에서 보다 많은 방화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방화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야간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형태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실제 방화범죄의 특징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방화를 저지르기 때문에, 방화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방화범의 실태를 통해 지적된 방화범죄 예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범자 관리를 지적할 수 있다. 방화범의 특징으로 나타난 연쇄성·재범성을 바탕으로, 방화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와 아울러, 방화범죄자에 대한 특징 및 특성·유형을 보다 자세하게 수 치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IV. 방화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1. 방화범죄 예방활동

방화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활동으로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방화범죄의 실태와 방화범죄자의 실태를 바탕으로 예상지역 및 예상자에 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울산 봉대산 방화사건 때처럼, 방화범죄자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연속적인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예방활동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방화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방화범죄 만의 특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화범죄의 특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실시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지구대 단위의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범자 관리는 비교적 자율적인 상황에서의 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나, 방화범죄의 경우 성범죄자와 같이 전자발찌와 같이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범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방화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주택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찰의 순찰활동이 적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경비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하여야 한다.

2. 방화범죄 수사활동

방화사건에 있어서 화재원인의 조사는 방화사건인지 실화사건인지 명확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방화범죄 초동조치가 가능한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방화사건 수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화재감식을 실시하는 체제를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경미한 화재는 경찰서 과학수사요원 및 담당형사가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인미상·방화·대형화재 등은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현장감식팀이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목을 일으키는 중대한 화재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고 있다.

문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경찰서 과학수사요원 및 담당형사가 실시하는 화재감식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과학수사요원의 대부분은 일반감식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화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경찰관의 경우도 일반사건 수사와 병행하여 일상의 수사처리 중 하나로 소홀히 되고 있다(박창순, 2003: 4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부서의 설립이 시급하다. 비록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방화사건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다른 범죄와 달리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때 전문적인 담당부서의 설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수사관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경찰의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과학수사과 및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계와 일선 수사기관인 경찰서의 과학수사반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수사계에 배치된 인력의 대부분은 일반감식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방화사건 수사에 있어서 일선 경찰서 수사과(형사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담당자는 일반사건 수사와 병행하여 일상의 수사처리 중 하나로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박창순, 2003: 45).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을 고용하고, 경찰의 전문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3. 방화범죄 수사를 위한 첨단기법의 활용

1) 과학수사의 활용

방화범죄의 수사는 증거물 훼손 및 외부의 모습이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수사자체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방화범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 물리적 증거확보를 위해 과학수사가 필요하다.

방화범죄는 화재의 다발성, 화재의 연장·확산, 도구의 조제, 방화촉진제의 현존, 실화원인개연성의 배제조건 존재, 화재발생 이전의 귀중품 이전, 주요도구·서류의 사전이동·제거, 화재현장의 타범죄 발생흔적, 급격한 화재의 확산, 과도한 화재손실, 고열의 흔적, 소방진입로의 봉쇄, 외부로부터의 강제 침입흔적, 휴일이나 주말의 화재, 한 장소에서의 연쇄화재,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화재 발생 직전의 보험가입, 특이한 냄새 등으로 방화를 추정할 수 있다(양태규, 2004: 571). 이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방화범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증거 확보를 위해 인화점 측정기와 탄화심도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다. 인화점 측정기의 경우 태그밀폐식 측정기·펜스키마르텐스측정기·클리브렌드 개방식 측정기 등이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화내용 판단을 위해서는 태그 밀폐식 측정기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국내의 과학수사센터를 설립하여 방화범죄 수사를 비롯하여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학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방화범죄의 경우 각 지방청 과학수사계의 화재감식팀에서 방화범죄를 가능할 수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화재 감식팀에서는 방화로 인해 소실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내용으로는 전문장비 및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과학수사센터에서 실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과학수사센터를 확장하고, 방화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수사 활용 폭을 더 늘려야 한다.

2) 프로파일링 기법의 활용

방화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증거확보가 용이치 않다는 문제점이다. 방화범죄는 불에 의해 소훼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남기고 간 증거역시 소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방화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수사기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방화범죄에 첨단수사기법이 통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에 관한 문제로 인해 효율적으로 방화범죄를 수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화범죄가 재범율이 높고 연쇄

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방화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기법 활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죄에 대해 방화범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방화범죄는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Muller, 2009; 임준태, 2010: 27). 따라서 이러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화범죄자에 대한 데이터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방화범의 범행 시와 방화 후 행동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임준태, 2010: 36).

실제로 미국에서 Sapp와 그의 동료들(1996)에서는 방화를 저지르고 나서 곧바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질문하여, 복수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방화 후에 범죠헌장에 체류하고 있었는지, 현장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혹은 완전히 현장을 떠난 후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등의 행동유형을 확인해 본 결과 재범을 경험한 연쇄방화범의 경우 방화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경우는 31.4%,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인근에서 화재상황을 지켜보았던 경우는 28.6%,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는 52.9%에 달했다고 한다. 결국 60% 정도의 방화범이 범행 현장주변에 잔류하고 있었다고 하였다(Sapp, *et. al.*, 1996; 임준태, 2010: 36).

이렇듯 방화범죄자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다른 범죄와 달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특정지어 졌으며, 연쇄성과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프로파일링과 같은 수사기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범죄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FBI가 수년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 VICAP을 구축하여, 연쇄범죄 발생시 초등 수사 단계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적발된 울산 봉대산 연쇄방화범의 경우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여 이동 동선 및 활동지역들을 바탕으로 범죠헌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방화범죄에 있어서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수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의 이론적 내용과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화범죄는 고의로 불을 붙여 물질을 태우는 것으로 목적물이 연소하는 원인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화재를 소화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소화 조치를 하지 않고 목적물을 소훼케 하는 행위를 통한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행위에 비해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연쇄성과 재범율, 모방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화범의 범죄 실행 및 범행장소 접근성이 용이한 편이며, 화재수사의 특성상 증거소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방화범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 범죄 은폐의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방화유형, 원한과 복수의 동기로 방화를 저지르는 유형, 반달리즘·사회적 불만과 스킬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방화유형, 방화광 및 정신병자에 의한 방화유형 등으로 나뉘고 있다.

방화범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행위에 비해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방화범죄는 주로 일몰 이후 밤 20:00에서부터 06:59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단독주택을 비롯한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다.

방화범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41세~50세 사이에 가장 많은 방화범이 있었으며, 방화 시 정신 상태를 살펴보면 음주에 의한 주취상태에서 가장 많은 방화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방화범의 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방화범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였으며, 현실불만이 다음을 따르고 있었다. 방화범죄자의 공범유무 및 공범수에 대한 실태에서는 단독으로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이 전체의 90%를 넘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화범의 가정상태를 살펴보면 하류계층 소속의 방화범이 전체의 63%를 차지하여 선행연구에서 설명하였던 하류계층에서 많은 방화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화범죄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화범죄 수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방화범죄에 대해서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방화범죄 전문 수사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화범죄 수사를 위해 첨단기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방화범죄의 경우 증거물 소실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물리적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과학수사기기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시해야 하며, 방화범죄의 경우 연쇄성이 높은 특징을 착안하여, 전문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방화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수치는 미미하게 발생을 하지만, 그 피해는 어느 강력범죄 못지않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화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는 기존의 내용 방화범죄처리내용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찰청. 2010. 2010 범죄백서.

공정식·김경하. 2008. KCPI를 통한 방화범들의 재범위험성 예측. 한국경찰학회보. 10(3): 109-135.

- 김경옥. 2009.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균. 2008. 범죄심리학. 서울: 청목출판사.
- 김수진. 2010. 방화범죄의 동기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7-230.
- 김영철·김성섭. 2007. 방화사건 판례 연구. 화재조사 논문집. 257-300.
- 박창순. 2003.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5: 37-60.
- 박철현. 2004.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형사정책. 16(2): 61-92.
- 성한기·김교현. 2004. 대구지하철 방화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163-185.
- 양태규. 2004. 과학수사론. 서울: 대명사.
- 윤상민. 2005. 방화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방안. 피해자학연구. 13(1): 79-100.
- 임준태. 2009. 연쇄방화범 프로파일링과 이동특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369-402.
- 임준태. 2010. 연쇄방화범 프로파일링과 이동특성. 수사연구. 28(1): 25-37.
- 이상현. 2004.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최종태. 2001. 방화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15(2): 31-45.
- 함근수·표주연·강덕기·장서희·문완식. 2009. 방화범죄 프로파일링을 위한 범죄분석 자료의 고찰. 한국법과학회지. 10(1): 1-12.
- 허경미·박소은. 2006. 방화범의 범죄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1): 53-74.
- C. Bartol & A. Bartol, 장석현·이창한 역. 2010. 범죄심리학. 서울: 청목출판사.

李河燮: 한성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 했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근무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경찰공무원의 경력정체가 직무만족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경찰의 탐리십과 입파워먼트 및 조직 유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1)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보안경찰, 북한이탈주민, 위기관리 등이다(sublh@hanmail.net).

투 고 일: 2011년 08월 25일
수 정 일: 2011년 09월 17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24일

A Study for Resolution of Arson

Ha Sub Le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rson crimes. Arson is a serious crime. Because the act is greater than the damage. Arson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and Arsonist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Thus, Police investigated about unique feature of arson. Investigation of police methods remains in a relatively low stage in contrast the number of fir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cunning tricks of arsons overwhelming the fire investigators. As a result, people who lost their home and their property from fire had to suffer with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 result. Now we should think over the above-mentioned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and well designed system model be prepared in referenc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ystem. To maintain Fire department utmost and able organization and to make it to be equal in worth to its name,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t must attain the well-trained fire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retain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Product Liability Law(2002.7.1), etc.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them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eeking and examining into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e police have to make an effort on their structural improvement and emphasize the nurturing experts of fire investigation. They have to attain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manage cooperation with inter-agency liaison before the brisk investigation environment. To be done these successfully, policy maker's decision and support is essential.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system improvement. Thus I hope this study be contributed for the people.

Key words: safety right, disadvantaged class, 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